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획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FTA,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해 왔다. 지난 1월 25일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세부계획'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양계산업 관련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8)로 문의하기 바란다.

1. 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 * 전업농기준 : 양계(닭) 30,000수 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 *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
-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
-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2. 사업대상자

- '11.12.31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용자)과 이차보전방식(용자) 대상자 구분 지원
 -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용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용자) 지원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표1.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보조+용자(준전업~전업농)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양 계	산란계	720천원/㎡	1,150	460~4,140㎡	5,000	4,140㎡~
	육 계	360천원/㎡	850	460~4,140㎡	3,000	4,140㎡~
	육용종계	450천원/㎡	1,150	3,300~6,600㎡	3,000	6,600㎡~
	부화장 (육용종계용)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300~6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600천개~

- * 농가 지원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축사면적당 비용)을 적용
- *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1,980~3,300㎡로 함
- * 전업농미만 농가는 사육시설 개선 면적에 사육시설면적당 지원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상한액으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용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용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 용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기간 : 1년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

표2. 2013년도 축종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축종별	생산액 ('11년)	생산액 비중(%)	2013년도 지원계획(안)		계
			보조방식	이차보전방식	
양계	3,745,900	25.5	50,851	54,137	104,988

표3. 시도별 사업비 배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양계 예산		소계
	보조방식	이차보전	
세종	983	1,046	2,029
부산	6	6	12
대구	158	168	326
인천	364	387	751
광주	27	28	55
대전	21	23	44
울산	149	158	307
경기	11,337	12,072	23,409
강원	1,624	1,729	3,353
충북	3,878	4,129	8,007
충남	8,844	9,416	18,260
전북	7,431	7,911	15,342
전남	5,215	5,552	10,767
경북	6,996	7,448	14,444
경남	3,253	3,463	6,716
제주	565	601	1,166
계	50,851	54,137	104,988

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지원제외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 (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발우대 및 사후관리 등

선발우대

-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 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받은 농가(자문 농가 선발우대는 지자체 판단)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지정 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하거나 철거 축사에 축사개축시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기타

- 기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았더라도 농가 별(축산업등록된 농장별)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추가 지원 가능

정리 : 최인환 기자